

## 공 고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경 주 시 장



###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의 책무 규정 개정 (안 제3조)
- 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개정 (안 제4조)
- 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 신설 (안 제4조2)
- 라. 규모 미만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 마. 그 밖의 자구정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바.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 3. 예고기간 : 2023. 6. 30. ~ 7. 20.(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20일(목)까지 경주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38102]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 환경과)  
(전화 : 054-779-6378, FAX : 054-760-7415)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http://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공중화장실등 설치·관리자의 책무)”를“(설치·관리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이”를 ““영”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시설”을 “관리시설 및 그 밖에 그림, 사진 화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 시설물)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공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편의위생용품 등을”을 “편의용품 및 내부 시설물 수리비, 관리운영비, 그 밖의 비용 등의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

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을“(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방법”을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을“(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방법”을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직급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성명			
	관리주체									성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4. 그 밖에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4.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 시설물)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 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 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7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 운영시간에만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① -----  
-----  
-----.  
-----  
-----  
----- 할 -----.

② (생략)

<신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생략)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  
-----  
----- 편의용품 및 내부 시설물 수리비, 관리운영비, 그 밖의 비용 등의 일부를 -----.

⑤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 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 관리방법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10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

----- 관리기준-----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  
-----  
-----  
----- 관리기준-----  
-----.

제10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 ① -----  
----- 별지 제2호서식-----  
-----  
-----.

② -----  
----- 별지 제2호서식-----  
-----.

③ -----  
----- 변경신고서-----  
-----

<p>한지 확인한 후 <u>별지 제2호서식</u>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탁관리 등)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 <u>별지 제3호서식</u>-----</p> <p>-----</p> <p>-----.</p> <p>제11조(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 -----</p> <p>-----</p> <p>-----</p> <p>---</p>
----------------------------------------------------------------------------------------------------------------------------------------------------------------	----------------------------------------------------------------------------------------------------------------------------------------------------------------